

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의결 되어 사업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에 따라 일부 토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사유토지 매입 변경(안)》

구 분	당 초	변 경
위 치	·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 산23 외 7필지	·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 산23 외 8필지(증 1필지)
사업기간	· 2019. 1. ~ 12.	· 2019. 1. ~ 12.(변경없음)
규 모	· 204.5ha	· 207.9ha(증 3.4ha)
사 업 비	· 30억원(도비 100%)	· 30억원(변경없음)

5. 검토의견

-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의결 되어 사업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토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,
- 당초 계획보다 1필지 3.4ha가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변경은 없음.
- 사업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에 의한 변경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. 끝.